

#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2-25
------	---------

발의년월일 : 2002. 4.

제안자 : 고성근의원의인

## 1. 개정 이유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에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어 지역발전에 저해 우려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석유판매소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김제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높이중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을 “중심지미관지구 : 2층이상”으로 규제완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종전의일반주거지역에서 석유판매소 설치를 허용함(별표3 내지 별표5 · 별표17)

## 3. 참고 사항

- 김제시도시계획조례
- 도시계획법시행령
- 타 자치단체의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높이제한내역

##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을 “중심지미관지구 : 2층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차목·별표 4 제1호차목·별표 5 제10호·별표 17 제10호중 “주유소”를 각각 “주유소·석유판매소”로 한다.

별표 16 제3호나목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제2항”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p> <p>① (생략)</p> <p>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p> <p>2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별표 3]</p> <p>1 (생략)</p> <p>가. ~ 자. (생략)</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p> <p>카. ~ 파. (생략)</p> <p>[별표 4]</p> <p>1 (생략)</p> <p>가. ~ 자. (생략)</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p> <p>카. ~ 파. (생략)</p> <p>[별표 5]</p> <p>1 ~ 9. (생략)</p> <p>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p>	<p>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p> <p>① (현행과 같음)</p> <p>1. 중심지미관지구 : 2층이상</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3]</p> <p>1 (현행과 같음)</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차. _____                      _____ <u>주유소·석유판매소</u>                      _____                      _____</p> <p>카. ~ 파. (현행과 같음)</p> <p>[별표 4]</p> <p>1 (현행과 같음)</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차. _____                      _____ <u>주유소·석유판매소</u>                      _____                      _____</p> <p>카. ~ 파. (현행과 같음)</p> <p>[별표 5]</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_____                      _____ <u>주유소·석유판매소</u>                      _____</p>

현행	개정안
<p>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p> <p>11. ~ 13 (생략)</p> <p>[별표 16]</p> <p>1. ~ 3 (생략)</p> <p>가. (생략)</p> <p>나. <u>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제3제2항의</u>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p> <p>다. (생략)</p> <p>4 ~ 7. (생략)</p> <p>[별표 17]</p> <p>1. ~ 9. (생략)</p> <p>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p> <p>11. ~ 13 (생략)</p>	<p>_____</p> <p>_____</p> <p>11. ~ 13 (현행과 같음)</p> <p>[별표 16]</p> <p>1. ~ 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u>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다. (현행과 같음)</p> <p>4 ~ 7. (현행과 같음)</p> <p>[별표 17]</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_____</p> <p>_____ <u>주유소·석유판매소</u> _____</p> <p>_____</p> <p>_____</p> <p>11. ~ 13 (현행과 같음)</p>

#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권

의안번호	2002-30
------	---------

제출년월일 : 2002. 4

제 출 자 : 김제시장

## 1. 제 안 이 유

- ▶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으로 1998년 정부의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1973. 6. 27일 지정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
- ▶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2. 주 요 내 용 ----- 별 첨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결정안]

## 3. 참 고 사 항

- ▶ 주민의견청취 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2. 2. 15 ~ 3. 2
  - 신 문 계 재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전주시공고 제2002-80호)
  - 의 견 제 출 : 우리시 주민 의견 없음
- ▶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02. 2. 21(목) 10 : 10 ~ 10 : 50
  - 장 소 : 금구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의견제출 : 주민 의견 없음

# 전주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

## 1. 입안사유

-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새로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하며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평가 결과에 의한 면적조정 및 완주군 요구에 의하여 완주군 봉동읍 일부를 제척하여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입안함.

## 2.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결정 계획

### ○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시계획구역명	행정구역명	면적(㎢)	비고
기정	전주도시계획구역	전주시·김제시·완주군의일부	313.20	
변경	전주도시계획구역	전주시·김제시·완주군의일부	302.67	감10.53㎢

- ※ 개발제한구역 면적조정 : 216,400,000㎡ → 205,865,790㎡ (감10,534,210㎡)
- 환경평가결과 면적 : 214,948,400㎡ - 8,753,460㎡(삼례도시계획구역) = 206,194,940㎡
  - 전주도시구역내 개발제한구역 면적 : 206,194,940㎡ - 329,150㎡(봉동) = 205,865,790㎡

### ■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	도시계획구역(㎢)		변경사유
시·군	읍·면·동		기정	변경	
합계		685.22	313.20	302.67	
전주시		206.28	197.75	195.77	· 전주·완주·김제 G.B면적조정 (환경평가면적 감10.205㎢)
완주군	구이·상관·소양·용 진·이서면·봉동읍	369.52	104.65	95.84	· 완주군 일부제척(0.329㎢)
김제시	금구·금산면	109.42	10.80	11.06	

○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13,200,000	감) 10,534,210	302,665,790	100.00	
주 거 지 역	31,484,189.8		31,484,189.8	10.40	변경없음
상 업 지 역	4,207,494		4,207,494	1.39	변경없음
공 업 지 역	6,292,516		6,292,516	2.08	변경없음
녹 지 지 역	271,215,800.2	감) 10,534,210	260,681,590.2	86.13	
보전녹지지역	-	증) 92,536,260	92,536,260	30.57	
생산녹지지역	4,821,106	증) 35,392,550	40,213,656	13.29	
자연녹지지역	266,394,694.2	감) 138,463,020	127,931,674.2	42.27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세분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녹지지역	216,400,000	감) 10,534,210	205,865,790	100	
보전녹지지역	-	증) 92,536,260	92,536,260	44.9	
생산녹지지역	-	증) 35,392,550	35,392,550	17.2	
자연녹지지역	216,400,000	감) 138,463,020	77,936,980	37.9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폐지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k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개발제한구역	전주시계획 구역내	216.40	감 216.40	0	전주시 : 103.04km <sup>2</sup> 완주군 : 102.56km <sup>2</sup> 김제시 : 10.80km <sup>2</sup>

### 3. 주민의견청취 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2. 2. 15 ~ 3. 2
- 신 문 계 재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전주시공고 제2002-80호)
- 공람 및 의견제출

연번	공 략 자	공 략 의 건	조치의견	비 고
1	덕진구 전미동2가 563-2 이 성 광 의 3인	덕진구 전미동 2가 88-12의 18필지를 생산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 요망	하수처리장 확장과 더불어 재정비시 검토할 계획임	하 수 처리장 부 근
2	덕진구 전미동2가 573-2 주 범 룡 의 2인	덕진구 전미동 월평, 신촌, 회룡마을을 생산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 요망	경지정리 완료지구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	월평 신촌 회룡
3	덕진구 전미동 2가 48번지 박 귀 봉	덕진구 전미동 은평마을 앞 답 2필지와 연봉마을 주변을 자연녹지로 변경요망	경지정리 완료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	은평 연봉 마을
4	덕진구 전미동 2가 395-1 이 회 양	덕진구 전미동 월평마을을 생산녹지로 지정하여 축사하 나도 지을수 없는 형편임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마을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	월평 마을
5	덕진구 우아동1가 132-1 김 중 철	덕진구 우아동 재전마을 위, 전답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줄 것을 전주민 이 요청함	표고3등급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	재전 마을
6	덕진구 진북동 416 우성아파트 김 영 철	전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 너무 많은데 난개발이 예상 됨으로 좀더 규제요 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평가검증 결과를 토대로 계획함	
7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4-49 현대@ 203/1602 정 두 채	완산구 석구동 154-8, 49-1번 지일원의 신봉마을은 15호 이상임에도 보전녹지 지역되어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안맞음 개발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해제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신봉 마을
8	완산구 석구동 137-7, 109-1, 160-2, 585 유 방 식	완산구 석구동 신봉마을을 인근 신기부락과 형평성 있게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신봉 마을
9	완산구 석구동 634-3, 580-1 박 두 권	완산구 석구동 근자, 신기, 신봉마을은 한마을이나 같음으로 형평성 있게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신봉 마을



연번	공 람 자	공 람 의 건	검 토 사 항	비 고
10	완산구 석구동 576-3 외 대지15개 주민 대표 최 광 수	완산구 석구동 신봉마을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신봉 마을
11	완산구 중노송동 26-1 기린봉APT 120/911 박 애 자	완산구 석구동 산149번지 일원의 신기, 신봉, 금성, 원석구 마을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추후 아파트 건설부지로 활용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신기 신봉 금성 원석구
12	완산구 석구동 210번지 김중선의 90인	완산구 석구동 석구, 추동, 신평, 신기, 금성, 신봉마을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신봉 금성 원석구
13	완산구 효자동1가 574-1 장 윤 식	완산구 석구동 151-1,-3, 152번지일원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신가 마을
14	완산구 석구동 신기마을 송 금 용외 15인	완산구 석구동 584-7번지 일대가 도랑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전녹지로 지정되었음, 자연녹지로 지정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신기 마을
15	완산구 평화동 3가 494번지 배문식	완산구 평화동 263-3번지 일원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경지정리지구내 마을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	신평 마을
16	완산구 색장동 837-4번지 홍 용 순외 30인	완산구 색장동 덕산, 부남마을은 90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덕산 부남 마을
17	완산구 동서학동 23통장 송 광 열외 10인	완산구 색장동 은석마을 일원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은석 마을
18	완산구 대성동 37-1번지 오상근외 1인	완산구 대성동 137-2번지 일원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 변경 요망	환경평가검증결과 표고 2등급지로서 보전녹지로 결정 관리	대성동 골안위
19	완산구 평화3가 동아현대 APT 103-108 권 의 구	완산구 용복동 산234, 234-4, 235번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땅으로써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환경평가검증결과 표고가 높은 지역으로보전 녹지로 지정관리(일부 자연녹지)	용복동 도덕골
20	완산구 삼천동 1가 767-1번지 배 명 숙	완산구 중인리 1445-1번지 일원을 취락지구 지정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연번	공 랑 자	공 랑 의 건 소	검 토 사 항 괄	비 고
21	완주군 구이면 이장협회 회장 정 재 회 외 7인	완주군 구이면 은석, 평촌, 두 현, 광곡, 덕천마을 전, 답, 취 락지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 지로 변경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 토 반영	구이(평촌 두현,광곡 덕천)
22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508 이용마, 정용성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지역의 전답을 자연녹지로 변경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 토 반영	구이 평촌
23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345 이 호 회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지역 의 전, 답을 자연녹지로 변경 하고 임야만 보전녹지로 보 전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 토 반영	구이 평촌
24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1507 이 용 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의 평촌 마을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취락지구 지정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 토 반영	구이 평촌
25	완주군 구이면 광곡 371-4 안 동 석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덕천, 두현, 평촌마을을 보전녹지에 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 토 반영	구이(덕촌 평촌,광곡)
26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223번지 임 정 순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화원부락 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 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 토 반영	구이 광곡
27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79-4 임 양 란	덕천리 179-4, 148-2번지 일원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 토 반영	구이 덕천
28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1234번지 백 암 학 원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산 232-7,8번지 일원은 서전주 I.C 인접토지로 경사가 완만 하고 잔목으로 이루어진 학교 법인 백암학원(백제예술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자연녹지 지정 요망	환경평가 검증결과 식 물상 2등급지로 보전녹 지지역으로 결정 관리	이서 반교
29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365번지 김 용 금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34번지 일원의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요망	환경평가 검증결과 식 물상 2등급지로 보전녹 지지역으로 결정 관리	이서 이성
30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22번지 은 증 국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일원의 농경지는 미경지정리된 수리 불안전답으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환경평가 검증결과 농 업적성도 2등급지로 생산녹지로 결정 관리	이서 상개
31	완주군 상관면 신리 745번지 육 기 동 외2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 490, 491, 523번지 일원은 면소재지와 접한 곳으로 자연녹지로 변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 토 반영	

연번	공 략 자	공 략 의 건	검 토 사 항	비 고
32	완산구 석구동 658-6번지 진 군 탁의 68인	완산구 석구동지역의 신평마을 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 변경 요망(중평마을과 형평성이 문제 가 됨)	경지정리지구내 마 을로 생산녹지지역 으로 결정 관리	신평 마을
33	완산구 석구동 210번지 김 종 선의 90인	완산구 원당동일원의 석구, 추 동, 신평, 신기, 금성, 신봉, 원원 당 마을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 지로 변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석구.추동 신평.신기 금성.신봉 원원당
34	완산구 원당동 791번지 김 현 두의 66인	완산구 원당동일원의 석구, 추 동, 신평, 신기, 금성, 신봉마을 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 경 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석구.추동 신평.신기 금성.신봉
35	완산구 석구동 최 준 석의 185인	석구동 일대의 주거지와 농지중 천수답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 지로 변경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석구동
36	완주군 상관면 신리 지큐빌@ 103/1605 함정구의 28인	완주군 상관면 신리지역의 임야 가 아닌곳은 보전녹지가 아닌 일반농지로 변경요망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반영	상관 신리

## ※ 김제시 협의사항

### ○ 김제시 의견

- 김제시 행정구역을 전주시계획구역에서 제척요망
- 자연녹지지역으로 배분되는 환경평가검증결과 종합등급 3,4,5등급지에서 표고중 남부산악지역 3등급지, 북부평야지역 3,4등급지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정부제도개선 방안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 배분 요망.
- 기존취락지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요망

#### 4.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 일 시 : 2002. 3. 8(금) 14:30

○ 장 소 : 부시장실

○ 참 석 : 17인중 10인참석

○ 자문내용

- 완산구 색장동·석구동 일원 및 완주군 구이면 평촌 일원은 환경평가 검증 결과 1·2등급으로 분류되어 보전녹지로 입안되었다고 하나, 대부분이 취락지이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전·답으로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로 조정함이 타당하고
- 하수처리장 부근은 경지정리가 된 답으로서 환경평가 검증 결과 1등급으로 분류되어 생산녹지로 입안되었다고 하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의식을 고려하고 자연녹지로 지정하더라도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연녹지로 조정함이 바람직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조치의견

- 환경평가 검증 결과 수질보전과 농업적성도를 감안하여 종합등급 1·2등급으로 분류되어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로 지정된 지역이나 지역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으나, 이는 정부의 방침인 자연녹지 비율 40%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금회에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계획에서 재검토함이 타당

#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권

의안번호	2002-2/
------	---------

제출년월일 : 2002. 4

제 출 자 : 김제시장

## 1. 제 안 이 유

- ▶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호남선 고속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철도건널목 입체화하여 사고 예방과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제공하며 건널목 통과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여 열차의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검산 과선교를 설치 계획에 따라
- ▶ 검산 과선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통망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 2. 주 요 내 용 ----- 별 첨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변경결정(안)]

## 3. 참 고 사 항

### ▶ 주민의견청취

○ 공 랑 기 간 : 2002. 3. 31 ~ 4. 13

○ 공 랑 방 법 : 지방일간지 2회 게재(전주일보, 전북매일)

시청 및 검산동계시관, 김제시청 인터넷(도시건축과)

○ 의견 제출자 : 없 음

# 김제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변경결정(안)

##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6	35	주간선 도로	5,930	대로 1-5	입석동 구역계	일반 도로	서암 공원	건설제277호 (‘73.7.3)	전북제171호 (‘93.6.14)
변경	대로	1	6	35	주간선 도로	6,447	중로 2-4	입석동 구역계	일반 도로	서암 공원		노선연장
기정	대로	3	9	25	보 조 간 선 도로	1,412	대로 1-5	검산동 구역계	일반 도로	호남 선 철도	전북제10호 (‘99.1.23)	전북제10호 (‘99.1.23)
변경	광로	3	1	45	주간선 도로	235	대로 3-3	중로 2-4	일반 도로			폭원확장
변경	대로	3	9	25	보 조 간 선 도로	670	대로 3-3	입석동 구역계	일반 도로	호남 선 철도		노선축소
기정	소로	2	149	8	국 지 도 로	230	대로 3-3	중로 2-4	일반 도로		김제제11호 (‘93.10.14)	
변경	중로	3	16	12	보 조 간 선 도로	230	대로 3-3	중로 2-4	일반 도로			폭원확장
기정	소로	2	146	8	국 지 도 로	180	중로 2-4	소로 2-144	일반 도로		김제제II호 (‘93.10.14)	
변경	소로	2	146	8	국 지 도 로	189	중로 2-4	소로 2-144	일반 도로			노선연장
폐지	소로	2	148	8	국 지 도 로	220	대로 3-3	중로 2-4	일반 도로		김제제11호 (‘93.10.14)	

## 2.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2	녹지	완충 녹지	김제시 검산동 535-5번지 일원	-	28,410	28,410		일반주거 지 역

김제 도시계획시설  
(도로·녹지)변경 결정(안)도

